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민총행복증진을 위한 행복지표, 행복영향평가,
국민총행복지수 도입 및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등〉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54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의견	4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4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8
2. 조문별 검토의견	10
가.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3조)	10
나. 국민총행복 기본계획, 부문별 계획, 시행계획 등 (안 제5조 및 제6조)	14
다. 국민총행복위원회 등(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18
라.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조사, 행복지수 산출 등(안 제12조부 터 제14조까지)	23
마. 행복영향평가(안 제15조)	29
바. 지역 간 형평과 국민 참여(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32
사. 부칙	3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현의원 등 79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5.
3. 회부연월일 : 2025.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률, 출생률, 고립감 등 주요 사회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

책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여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민총행복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국민총행복 기본계획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 라. 정부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정기적으로 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지역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 또는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정에 국민과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하고, 행복의 날부터 1주간을 행복주간으로 정함(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고,¹⁾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음.²⁾

이에 국회는 국민의 행복 보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 청년,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체육, 산림, 교통약자 이동권, 상훈, 자원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 관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였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정부는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³⁾

1)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제22대 국회 제42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07.18.)

다만, 기존의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되어 국민의 행복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은 다소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정하고,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행복지표와 행복영향평가, 국민총행복지수를 도입하며, 국민의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두텁게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있음.

특히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Life evaluation) 수준은 전 세계 147개국 중 58위로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물질적 수준에 비하여 국민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은 낮은 편임.

[2025년 우리나라 세계행복지수 분야별 순위]

구분	불평등	사회적 지원	1인당 GDP	기대 건강수명	자유	관대함	삶 만족도
순위	69	84	21	3	104	55	
구분	부패 인식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기부	자원봉사	낮선 사람 돕기	58
순위	54	111	70	55	93	108	

※ 자료 : 세계행복보고서 2025(World Happiness Report 2025)

제정안은 국민총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정책 목표로 하여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국민총행복 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과 “국민총행복위원회”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최근 발의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⁴⁾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 상 기본사회란 헌법상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돌봄·교육·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이를 위하여 ‘기본적 생애소득’을 지급하여 생애주기에 필요한 소득 수준을 보장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 주거,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함.

이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위원회는 5년 단위로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부문별 기본사회 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시·도 계

4)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873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최혁진·김우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286호)

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도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기반하여 국민들의 주체적인 행복 추구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및 국민행복 증진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나, 정부에서 추진·설치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정책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입장을 제출하였음.

이 외에도 개별 조문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행복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개발하여 국민총행복지수를 산출·비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행복지표 및 국민총행복지수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국민총행복위원회 및 지역행복위원회의 신설은 행정상 비효율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제명을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여, 본칙 4장 총 18개 조문 및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정사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국민총행복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제5조	국민총행복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	사무처
	제11조	재정 확보와 지원
제3장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실시	제12조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조사 실시
	제13조	국민총행복지수
	제14조	지역행복지표 및 지역행복조사
	제15조	행복영향평가
제4장 지역 간 형평과 국민참여	제16조	지역 간 행복격차 해소
	제17조	국민 참여
	제18조	행복의 날
부칙		시행일

제정안은 행복지표를 개발하여 행복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총행복지수를 산출한 뒤 이를 반영한 국민총행복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며,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행복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총행복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참여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2. 조문별 검토의견

가. 총칙 규정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정안은 제명을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국민의 행복 증진을 기본이념으로 삼음(안 제1조 및 제2조). 또한 “행복”, “국민총행복”, “행복지표”, “행복조사”, “국민총행복지수”, “행복영향평가”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를 규정함.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을 토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행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지표화하여 정책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주체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감과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삶의 질적 요소들이 충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안정, 건강, 사회적 관계, 시간적 여유, 자율성, 공동체 연대 등 주관적·

제 정 안

객관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만족 상태를 말한다.

2. “국민총행복”이란 공공정책의 중심 가치를 국민의 행복 실현에 두는 정책의 설계·시행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모든 국민이 주관적·객관적 삶의 만족과 안녕을 고르게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3. “행복지표”란 국민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된 정량적 또는 정성적 기준으로서 소득 등 생활 수준, 일자리, 일과 삶의 균형, 건강, 교육, 여유시간, 환경, 주거, 공동체, 자율성, 거버넌스 등 다양한 삶의 영역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한 지표를 말한다.
4. “행복조사”란 국민의 행복 수준 및 관련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국민총행복지수 산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조사를 말한다.
5. “국민총행복지수”는 행복지표들을 종합하여 산출한 수치로서 국민총행복 실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6. “행복영향평가”란 정책을 국민의 행복 증진에 부합하도록 설계·수정하기 위하여 법령, 정책, 예산 등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국민총행복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이하 “행복정책”이라 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정책 수행, 지역 및 집단 간 행복격차 완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역의 행복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조 및 제2조) 제정안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이 주체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여, 법률의 지향점을 밝히고 법률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며 법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념을 선언적으로 밝히고 있음.

다만, 목적규정에서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 국민의 행복한 삶 등 법률의 제정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기본이념규정에서도 행복 추구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국민의 행복 증진을 다루고 있는데,

목적규정과 기본이념규정의 내용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임으로 목적규정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기본이념규정의 표현을 구체화하거나 별도로 기본이념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목적규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3조) 제정안은 이 법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행복”, “국민총행복”, “행복지표”, “행복조사”, “국민총행복지수”, “행복영향평가” 등 6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은 국민총행복이란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모든 국민이 주관적·객관적 삶의 만족과 안녕을 고르게 누리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대 간’에 ‘행복 격차가 없는 상태’가 바람직함을 전제로 “행복 불평등”이 없는 상태를 국민총행복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 국민총행복을 측정하는 ‘국민총행복지수’는 ‘특정 시점에서 현재 세대’의 생활 수준, 일자리, 일과 삶의 균형, 건강, 교육 등 삶의 영역의 상태를 측정하는 행복지표들을 종합하여 “행복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국민총행복’에 관한 법률상 개념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⁵⁾

따라서 이 법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개념인 ‘국민총행복’과 ‘국민총행복지수’가 의미하는 바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여 법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음.

5) 이태진·김성아 외(2021)의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에 의하면 국가의 행복 수준과 행복 불평등은 역의 관계에 있으므로 롤즈의 최소극대화(maximin) 원칙에 따라 행복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행복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행복 수준과 행복 불평등은 각각 별도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국민총행복’과 ‘국민총행복지수’가 행복 수준 또는 행복 불평등 중 동일한 것을 의미·측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국민총행복 기본계획, 부문별 계획, 시행계획 등 (안 제5조 및 제6조)

제정안은 국민총행복위원회는 5년마다 국민총행복 기본계획(안 제5조)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 단위의 부문별 계획 및 1년 단위의 시행계획(안 제6조)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 정 안
제2장 국민총행복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제5조(국민총행복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제7조에 따른 국민총행복위원회는 국민총행복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총행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국민총행복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행복지표와 행복조사의 결과 및 제13조에 따른 국민총행복지수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른 국민총행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총행복 증진의 기본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부문별 주요 정책, 추진 전략 및 체계 3. 국민총행복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행복지표 개발, 행복조사, 국민총행복지수 및 행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방안 6. 행복정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컨설팅 방안

제 정 안

7. 행복정책에 관한 국민 인식 개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8. 그 밖에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제7조에 따른 국민총행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제7조에 따른 국민총행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립·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민총행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계획,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민총행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7조에 따른 국민총행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5조) 제정안은 국민총행복위원회는 행복지표, 행복조사 결과, 국민총행복지수를 반영하여 5년마다 국민총행복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7조에 따른 국민총행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주체로서 그 자체가 심의위원회의 성격이 있으므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별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없고,

기존 입법례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 주체와 심의 주체가 다른 경우에 각종 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⁶⁾

(안 제6조)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5년마다 부문별 계획과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 및 부문별 시행계획을 국민총행복위원회에 제출하며, 국민총행복위원회가 부문별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국민총행복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국민총행복위원회의 국민총행복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의견청취 및 통보의무만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④ (생략)

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⑦ (생략)

을 규정하고, “국민총행복 증진계획”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지역행복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행복지수를 산출하는 정책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국민총행복 증진계획”에 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국민총행복위원회 등(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정안은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안 제7조 및 제8조), 국민총행복위원회 산하의 전문기관과 사무처(안 제9조 및 제10조) 설치, 행복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을 규정함.

제 정 안
제7조(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총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이행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조정·개선에 관한 사항 4.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조사에 관한 사항 5. 국민총행복지수 산출·측정 및 정책 환류에 관한 사항 6. 행복영향평가 기준 수립 및 실시 권고에 관한 사항 7.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민의 행복 증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역행복지표 개발, 지역행복조사 실시, 지역행복지수 산출 등 지역의 행복정책 시행 및 심의·조정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행복위원회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정 안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민의 행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행복지표 개발, 행복지표 및 행복조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자문 등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 확보와 지원) ① 국가는 행복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행복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재정 또는 행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안 제7조) 제정안은 국민총행복 실현에 관한 정책 조정과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총행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조정 사항, 위원회 산하의 전문기관 및 사무처 설치를 규정함.

그런데 **국민총행복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으로,⁷⁾

동법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⁸⁾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며,⁹⁾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로운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¹⁰⁾

따라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는 방안,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방안,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두고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정안은 국민총행복위원회가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조정·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면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만을 국민총행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는 ‘시행계획’의 조정·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일관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외에도 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행복위원회’를 규정하면서도 위원회의 소속이나 기능, 업무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행복위원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23.5.16.개정, 2023.11.17.시행)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의 설치 여부, 소속, 구성, 기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활용을 규정하여 방만한 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¹¹⁾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행복위원회와 기능 등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하여금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외에도 202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11)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조사, 행복지수 산출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정안은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조사 실시(안 제12조), 국민총행복지수 산출(안 제13조), 지역행복지표 개발 및 지역행복조사 실시(안 제1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장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실시 제12조(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조사 실시)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행복지표 선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행복지표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복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조사 실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정부는 행복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행복지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⑥ 행복지표의 측정 요인, 행복조사 실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민총행복지수) ① 정부는 행복지표와 행복조사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총행복지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민총행복지수 산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국민총행복지수의 산출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14조(지역행복지표 및 지역행복조사)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지역행복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행복지표는 국민총행복지표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행복지표와 지역행복조사를 바탕으로 지역행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행복지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행복지표 개발, 지역행복조사 실시 및 지역행복지수 산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행복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역행복지수 및 지역행복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안 제12조 및 제13조) 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행복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토대로 행복조사를 실시하고, 행복지표와 행복조사를 바탕으로 국민총행복지수를 산출하도록 하여, 삶의 주관적·객관적 만족 상태를 나타내는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함.

UN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전세계 국가의 삶의 만족도(Life evaluation)를 조사하여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하고 있는데,

2025년의 경우 불평등(Inequality),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1인당 GDP(GDP per capita), 기대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2021년 자료), 자유(Freedom), 관대함(Generosity),

부패 인식(Perceptions of corruption), 긍정적 감정(Positive emotions), 부정적 감정(Negative emotions), 기부(Donated), 자원 봉사(Volunteered), 낯선 사람 돕기(Helped a stranger) 등 12개 영역을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평가함.

우리나라에서도 국가통계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 등 11개 영역에서 71개 지표를 활용해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¹²⁾

국회미래연구원에서도 2020년부터 국민의 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등 「한국인의 행복 조사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¹³⁾

이와 같이 국민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은 국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정도를 평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행복지표를 개발하여 국민총행복지수를 산출하

12) 국가통계연구원, 『국민 삶의 질 2024』, 2025.

13) 국회미래연구원, 『2024 한국인의 행복 조사 심층분석 보고서』, 2025.

도록 하고 있는데, 삶의 주관적 영역인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도출하고 측정·수치화하여 **단일한 국민총행복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⁴⁾

또한 행복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정책에의 반영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민총행복지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민총행복지수의 **활용방안과 정책환류에** 관하여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4) 제22대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11.12.)

통계청차장 안형준 : 이 건은 저희가 수용이 좀 곤란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윤호중 위원님께서 2건의 과제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성한 삶의 질 지표를 정책에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지수 작성 이 2건의 과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저희가 정책 연계와 활용에 대해서는 기초연구를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일 지수 산출**하는 거는 구성지표 간의 가중치 배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대서 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불필요한 중립성의 시비 우려도 있고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 삶의 질 내지는 행복지수를 작성하는 전 세계 나라, 1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일지수를 작성하는 나라는 세 나라인데 그게 다 그냥 n분의 1로 가중치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과제 중에 연계·활용은 반드시 할 건데 단일지수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거는 수용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히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박홍근 위원 : 한번 다시 여쭙보고 싶은 게, 윤호중 위원께서 관련된 국회 포럼 대표를 맡고 계세요. 국민총행복 무슨 포럼 대표셔서 지난 4년 동안도 계속하셨고 이번에도 그걸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GDP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문제다 해서 이런 총행복지수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걸맞은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실제 이것을 객관적인 어떤 지수로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통계청차장 안형준 : 그렇습니다. 유엔의 스티글리츠 보고서에도 보면 삶의 질 지표라든가 행복지수 이런 것들을 지표의 체계를 구상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하나의 지수로 만드는 거는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지금 71개의 지표가 있거든요, 삶의 질 지표가. 그중에 보면 일인당 GDP도 있고 비만율도 있고 고령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지표들 간의 비중을 매긴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수로 한다기보다는 지표 체계로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의원실에서 혹시 필요하셔서 하나의 지수로 뽑아 달라고 하시면, n분의 1이든 가중치를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께 따로 제공해 드릴 수는 있는데 통계청이 작성해서 하면 국가통계로서 승인을, 어떤 공신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건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14조)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지역행복조사를 실시하며, 지역행복지수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2개 시·도와 22개 시·군·구의 조례에서 행복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행복지표를 개발하여 지역행복지수를 산출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행복지표와 지역행복지표, 국민총행복지수, 지역행복지수는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통계 관련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행복지표를 구성하는 요소나 국민(지역)총행복지수 산출시 가중치 등이 상이하여 ‘행복지표와 지역행복지표 간’, ‘지역행복지표 간’, ‘국민총행복지수와 지역행복지수 간’ 또는 ‘지역행복지수 간’ 차이가 발생할 것인데 일반 국민이나 정책과정의 공무원으로서 어떤 지표 또는 지수를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해야 하는지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주민들의 총행복을 시기에 따라 분석하고자 할 때 정부의 행복지표를 활용하여 국민총행복지수를 산출한 결과와 특정 지역에서 활용하는 지역행복지표를 사용하여 지

역행복지수를 산출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주민총행복의 개선 여부 또는 개선 정도를 분석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마. 행복영향평가(안 제15조)

제정안은 주요 계획이나 사업이 국민 또는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민·주민행복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제 정 안
제15조(행복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그 계획이나 사업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국민행복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그 계획이나 사업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주민행복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국민행복영향평가 및 주민행복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5조)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주민)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주민)행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각종 정책이 국민(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정책과정에서 국민(주민)행복을 정책의 실시 여부나 정책 수단, 시기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정책

의 시행이 국민(주민) 행복에 미치는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기존의 입법례**를 참고하면 영향평가의 실시 외에 영향평가의 대상, 시기, 항목, 절차, 결과의 활용 방안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주민)행복 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이나 시기, 항목, 절차, 환류 방안 등 국민(주민)행복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⁵⁾¹⁶⁾¹⁷⁾

15) 「성별영향평가법」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해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또한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행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행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요건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주요하지 않은 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주민행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시간, 금전, 인력 등 비용에 비하여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주민행복영향을 실시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⑥ (이하 생략)

바. 지역 간 형평과 국민 참여(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정안은 지역 간 행복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안 제16조), 국민·주민의 참여 촉진 및 교육(안 제17조), 행복의 날 지정(안 제18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4장 지역 간 형평과 국민참여
제16조(지역 간 행복격차 해소) ① 국가는 국민총행복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 지역이 지역행복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한다.
③ 국가는 국민총행복지수의 지역별 분석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되, 전체 자료는 지역 간 서열화나 경쟁을 유도하지 아니하도록 제한된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국민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과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민참여형 공론화 제도 및 디지털 참여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총행복의 가치와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민총행복에 관한 사항이 학교 교육, 평생 교육 및 공무원 교육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행복의 날) 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하고, 행복의 날부터 1주 간을 행복주간으로 한다.

제 정 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복정책박람회 등 행복의 날 및 행복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6조) 제정안은 국가는 국민총행복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행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며, 국민총행복지수의 지역별 분석자료를 제한된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토 불균형이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인구, 일자리, 인프라 등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총행복’이라는 주관적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역 간 행복 불평등을 완화하여 국민총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있음.

다만, 국민총행복지수의 지역별 분석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지역 간 서열화나 경쟁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겠으나, ‘발로 하는 투표(foot voting)’¹⁸⁾의 측면에서 관련 자료를 지역 간 국민총행복 차이를 비교하는데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자료·수치의 투명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18) 티부(Charles Tiebout)의 ‘발로하는 투표’란 시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비교하여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한다는 주장으로, 그는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지방정부가 경쟁을 함으로써 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보았음.

(안 제17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과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시민참여형 공론화 제도, 디지털 참여 플랫폼 구축 방안, 교육 및 홍보 실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국민총행복 증진의 정책과정에서 국민과 주민이 정책의 대상이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은 ‘시민참여형 공론화 제도’와 ‘디지털 참여 플랫폼’ 등 다른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률상 용어로의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18조) 제정안은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행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지정하고 행복의 날부터 1주간을 행복주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기념일 지정시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¹⁹⁾

19)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UN은 매년 3월 20일을 ‘국제 행복의 날(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로 지정하여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등은 해당일에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국제 행복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별표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사. 부칙

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여 대통령령 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350

참고

행복 증진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사례

조례명	규정 여부	행복지표	기본계획	시행계획	행복영향평가	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	○	○	X	○ (행복 자문단)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	○	○	○	○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		○	○	X	X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	○	○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	○	○	○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	○	X	X	○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	○	○	X	○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	○	○	X	○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	○	○	X	○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	○	○	○	○
구리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	○	○	○	○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		○	○	○	○	○ (행복 자문단)
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		○	○	○	○	○

조례명 / 규정 여부	행복지표	기본계획	시행계획	행복영향평가	위원회
평택시민 행복증진 조례	○	○	○	○	○
삼척시민 행복 증진 조례	○	○	○	○	○
태백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	○	○	○	○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X	○	X	X	○
김제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	○	○	○	○
전주시민 행복 증진 조례	○	○	○	○	○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조례	○	○	○	○	○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	○	○	X	○
영암군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	○	○	X	X
의령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	X	X	○	○